의안 번호	37

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
제2차 의회운영위원회(2026.9.22.)

창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심 사 보 고 서

창 원 시 의 회

(의회운영위원회)

창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7

2026. 9. 22.
의회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안 자: 남재욱 의원 등 10명

나. 발 의 일: 2026. 8. 24.

다. 회 부 일: 2026. 8. 27.

2. 제안이유

회기 중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의 휴무 사용 기한을 확대하고, 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공적 업무 수행 및 근무장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당직근무자의 휴무 사용 기한을 ‘6주 이내’로 함(안 제5조)

나.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에 공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(안 제7조제1항)

다.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에 ‘그 밖에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’을 신설(안 제8조제1항제6호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4조
「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」 제6조

나. 시행시기: 공포한 날부터 시행

5. 검토의견

가. 규칙 개정 배경

❍ 현행 규칙은 당직근무 후 토요일·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 휴무하도록 하고 있으나, 정례회·임시회 등 회기 중 업무여건상 휴무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, 휴무 사용 기한을 6주 이내로 확대하여 당직근무자의 실질적인 휴무 사용을 보장하고, 축·조기 전달 및 공식행사 지원 등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발생하는 공적 업무를 반영하여 공적 업무수행 및 이에 따른 근무 장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 조문 검토

❍ **안 제5조(당직근무자의 휴무)는** 당직근무자의 휴무 사용 기한을 현행 당직근무일부터 7일 이내에서 6주 이내로 확대하여, 회기 중 의정활동 지원 등 업무여건으로 휴무 사용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휴무 사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됨.

다만, 휴무 사용기한 자체를 6주 이내로 일률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현행 7일의 기간은 유지하되, 회기 중에는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않거나, 회기 중 휴무가 어려운 경우 회기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휴무하도록 하는 방안 등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❍ **안 제7조(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)제1항은** 현행 규칙상 당직근무자의 근무장소를 청사 내 일정 장소로 한정하고 있어, 단서를 신설하여 외부 공식행사 지원, 의전물품 전달 등 공적 업무수행을 위한 당직근무 장소의 예외를 명확히 규정하여 실제 업무와 규칙 간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판단됨.

❍ **안 제8조(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)제1항은** 현행 규칙상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는 주로 청사 안전·관리 업무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나, 청사의 안전 유지 및 의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으로 당직근무자의 역할을 확대하여, 실제 업무내용을 규칙에 반영하고 업무수행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판단됨.

❍ **안 제8조(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)제1항제6호는** 당직근무자의 모든 공적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, "그 밖에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" 신설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충적인 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판단됨.

다. 종합의견

❍ **본 개정규칙안**은 회기 중 의정활동 지원 등 업무여건으로 당직근무자의 휴무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휴무 사용기한을 확대하고, 축·조기 전달 및 공식행사 지원 등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적 업무 수행과 근무 장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 **현행 당직근무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,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**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❍ 특히 당직근무자의 휴무 사용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당직근무에 따른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, 의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적 업무에 대한 수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**당직근무의 효율성과 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**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❍ 다만, **안 제5조의 휴무 사용기한**을 일률적으로 6주로 확대하기보다는 현행 7일을 유지하면서 회기 중 해당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❍ 따라서 **본 개정규칙안**은 당직근무자의 휴무제도 개선과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은 인정되나, **휴무 사용기한에 대해서는 실제 의회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**할 것으로 판단됨.

6. **질의·답변 요지**: 기재 생략

7. **토론 요지**: 기재 생략

8. 심사 결과: **원안가결**

9. **소수의견의 요지**: 없음

10. **기타 필요한 사항**(부대의견, 건의 사항, 촉구사항 등): 없음

참 고 관계 법령

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

제4조(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1.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
2.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

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■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

제6조(당직 및 비상근무) ① 의장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, 도난,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 처리, 업무 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영 제2조의3에 따라 전시·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
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창원특례시의회